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
-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함(안 제46조제8항 및 제9항).
-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7조제1항)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88조부터 제90조).

-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및 제108조).

II. 검토 의견

1. ‘종사자 대표’의 내용 명확화 필요

- 개정안 제4조의2제1항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를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5명의 편성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라는 용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적용상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 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 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 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2.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업자 확대의 다른 조문에의 반영 필요

- 개정안은 안 제87조제1항1)에서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업자를 확대하면서 이를 안 제90조제1항에는 반영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는 문구를 그대로 두고 있어 법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현행법 제90조제1항의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 1) 안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の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는 문구를 ‘제87조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²⁾하면서, 현행법 제9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³⁾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는 문구는 개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안 제87조제1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안 제90조제1항의 ‘제87조제1항에 따른’을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현행법 제9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제2호에 따른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 <삭 제> <삭 제> <삭 제>

- 3)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제2호에 따른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u> <u>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u>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u>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제2호에 따른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제2호에 따른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